

# 2022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규대상자 모집

## 1. 모집개요

- 신청자격 :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상」 등록된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)
  - \* 단,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[3. 제외대상 참조]
  - \*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
- 지원내용 : 취미·여가, 직업탐구, 자립준비, 관람·체험,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 가능한 바우처 제공
- 신청방법 : 주민등록 상 관할 읍·면사무소,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선정방법 :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통한 참여자 선정

## 2. 유의사항

-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, 주간활동 서비스 급여유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일부 차감

### <주간활동 - 활동지원 급여량 조정>

| 구 분            | 단축형  | 기본형   | 확장형  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
| 주간활동서비스 급여량    | 85시간 | 125시간 | 165시간 |
| 활동지원서비스 감액 급여량 | -    | △22시간 | △56시간 |
| 총 급여량          | 85시간 | 103시간 | 109시간 |

- 신청급여 시간은 원하는 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으나 지원자 욕구 및 생활실태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에 유의

## 3.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【제외대상】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\*에 해당하는 자
  - \*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·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-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
- 취업자(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, 국민연금법,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\*에 입소한 자
  - \* 장애유형별 거주시설, 중증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
-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)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정기 이용자
-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
-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
  - 장애인 주간보호시설(센터) 이용자
  -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3회, 일일 3시간 이상의 낮시간 서비스 이용자
  -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

## 4. 문 의 : 주민등록 상 관할 읍·면사무소,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

# 2022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신규대상자 모집

## 1. 모집개요

- 신청자격 :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상」 등록된 발달장애인(지적·지폐성)
  - ※ 단,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[3. 제외대상 참조]
  - ※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
  - ※ 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방과후 돌봄 취약자\*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로 우선 선발 가능

### \*돌봄 취약자

- ① 돌봄취약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장애인부모, 한부모, 조손, 맞벌이 가정, 다장애가구(형제·자매) 등)
  - ※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,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
- ② 일반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
- ③ 「초중등교육과정총론」 교육부 고시[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10시간 이하 이용자,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]
  - ※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
- ④ 도전적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

- 지원내용 : 취미·여가, 직업탐구, 자립준비, 관람·체험,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 가능한 바우처 제공(월 44시간)
- 신청방법 : 주민등록 상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선정방법 : 제외대상 여부 확인 및 서비스 적격성 판단 후 대상자 선정

## 2. 유의사항

- 제공시간 : 월 바우처 방과후활동 급여시간의 범위에서 평일 방과후시간(13시~21시) 및 토요일(9시~18시)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협의 통해 적정 제공
- 토요일은 오전반, 오후반 등 제공기관 사정에 따라 선택적 프로그램 운영 가능

## 3. 제출서류

- ①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신청(변경)서[서식 제1호]
-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[서식 제2-1~4호]
- ③ 유사서비스 확인서 / 초등학교장 직인 날인 (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 않을 시 학교장 직인 생략 가능)
- ④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)
- ⑤ 장애정도 심사 시 '심사규정'에서 정하는 서류(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)

## 4.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【제외대상】

-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 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48조 2에 따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자
- 「아이돌봄지원법」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\*에 입소한 자
  - \* 장애유형별 거주시설, 중증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단기거주시설
-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이용자
- 초·중등교육과정 총론(교육부 고시 제2015-74호), 국정과제 49-2(온종일 돌봄체계 구축)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6조(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)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(돌봄교실) 이용자
-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제24조(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)에 따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이용자
- 그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
  - 장애인 주간보호시설(센터) 이용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

## 5. 문 의 : 주민등록 상 관할 읍·면사무소,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